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2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50280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변론 종결2021. 6. 11.

판결 선고2021. 7. 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5028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C가 2017. 6. 9. 피고에게 발행해 준 액면 1,100,000,000원, 수취인 B,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66,883,2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6,883,23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행의 '2018. 9. 13.자'를 '같은 날'로 고치고(2018. 9. 13.은 재도정본 부여일로 보인다), 제6면 각주 3)의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석준협

판사권양희

판사주채광